

대 법 원

2016. 1. 14. 원본영수	인
20 . . . 판결송달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5두51477 제임용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와우리, 수원대학교)

대표자 이사장 최서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박영훈, 이승철, 구교웅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성삼제

소송수행자 김태경, 김종무, 백민진

피고 보조참가인

1. 손병돈

2. 장경옥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재환, 권정호, 하주희, 김유정,

남성욱, 김종귀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김기현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이영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누742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4.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인복

이 인 복



주 심

대법관

고영한

고 영 한



대법관

김소영

김 소 영

